

	<b>보도자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	<b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b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국 서민금융과		
책임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당자	김민하 사무관(2156-9478)
배포일	2015. 9. 16.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**제 목 :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추진**

**1.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**

- 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(15.9.16일)에서 보고됨
- (추진배경)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“민원24”와 연계 추진
  - \* 행정자치부는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‘13년부터 추진, 현재 건강, 세금, 자동차 등 총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 중이며 ‘15년 중 휴면예금 등 20종 확대 추진(‘15.7월~12월)
- (주요내용) 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  - \* 현행 제10조(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)에 따른 자료 조회 기관은 재단, 금융기관,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험회, 저축은행중앙회 등

**2. 향후 일정**

- 입법예고(‘15.9.22~11.2), 규제·법제심사 및 차관·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연내 시행

**3. 기대효과**

-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, 개별 금융·보험회사 등을 통한 조회 외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 강화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
 넓게 들겠습니다  
 빠르게 알려겠습니다